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78호,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6. 14.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7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로 보하고”를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치료감호소는”을 “국립법무병원”으로, “치료감호소 사무로”를 “국립법무병원 사무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소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료감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을 “국립법무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치료감호소장”을 각각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774”를 “22,779”로 하고, 검사 계 및 검사 “14”를 각각 “1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 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 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 수원, <u>치료감호소</u> 및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u>국립법무병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① (생 략)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치료감호소</u> · 소년원 · 소년분 류심사원 · 보호관찰심사위원 회 · 보호관찰소 · 위치추적관 제센터(이하 이 항에서 “보호 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한 기 관평가 및 지도 · 감독	4. <u>국립법무병원</u> ----- ----- ----- ----- -----
5. ~ 26. (생략)	5. ~ 26. (현행과 같음)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 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 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 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	제18조(연구위원) ①----- ----- ----- ----- -----

게 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생략)

제5장 치료감호소

제31조(직무)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소장) ①치료감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12명 -----
-----.

②-----

--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

-----.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국립법무병원

제31조(직무) 국립법무병원은 --

----- 국립법무병원 사무 -----.

제32조(원장) ① 국립법무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

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하부조직) 치료감호소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조사·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장 소속하에 약물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센터장은 치료감호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생략)

-----.

② 원장-----

-----.

제33조(하부조직) 국립법무병원-----

----- 국립법무병원-----

-----.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 -----

----- 국립법무병원장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법무병원장-----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774</u>		<u>22,779</u>	+5	
		•	•		•		
		•	•		•		
검	사	계	<u>14</u>		<u>19</u>	+5	
검	사		<u>14</u>		<u>19</u>	+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